

의안번호	2220032
의 퇴 인	이종배의원
회 답 일	2026.10.6.
추 계 번호	26B3678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 (연구개발 등의 지원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(제1항) 1.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다.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 폐자원 선별·재활용 기술	재량규정
2	안 제14조의2 (자원회수 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원)	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별해체 등을 통한 자원 회수 실적이 좋은 기업을 자원 회수 우수기업(이하 “우수기업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(제1항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(제2항) 1. 분별해체 적용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. 분별해체 및 자원 회수에 필요한 설비·장비 구입 자금의 융자 및 보조 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또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의 감면 4. 그 밖에 우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	재량규정
		우수기업의 지정 기준,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4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제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9조 (연구개발 등의 지원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조의2 (자원회수 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원)		

2. 상세 사유

□ 연구개발 등의 지원 (안 제9조)

-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분별해체 장비 및 폐자원 선별·재활용 기술을 연구 및 개발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·운영할 경우,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르면, 현행법 제9조1)에 따른 기술연구개발단은 별도로 구성·운영되고 있지 않으며, 개정안에 따라 기술연구개발단의 역할이 확대될 경우 별도의 기술연구개발단이 구성·운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기술연구개발단의 구성 및 운영 여부, 수행 업무의 범위 및 인력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항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□ 자원회수 우수 기업의 지정 및 지원(안 제14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별해체 등을 통한 자원 회수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자원회수 우수기업(이하 “우수기업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및 조세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르면, 현재 자원회수 우수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별도의 사업은 수행되고 있지 않음

1) 제9조(연구개발 등의 지원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1.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
 - 가.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
 - 나.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
2.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, 자금,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
3.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(出捐金)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.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우수기업의 지정 규모 및 지원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개정안에서는 우수기업의 지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,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○